

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2. 6. 14. 규정 제84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41조의 2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조정실장, 원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1명, 학생 3명,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한다.

③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③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한다.

제5조(등록금 자료 제출)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를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일시, 장소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

③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) 위원 중 관련 전문가(외부 위원)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5-0-15.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